

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(제12조관련)

$$\text{세금} = \frac{\{(\text{환급금 총액} - \text{투표적중우권의 총 발매금액}) \times \text{환급금에 대한 과세율}\} \times 1}{\text{투표적중 단위우권 수}}$$